

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박춘선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 외 28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동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기후위기에 따라 도심 내 녹지 확보와 유지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옥상녹화지를 우수하게 관리하고 있거나, 옥상녹화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시장이 표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.
- 이는 날로 심각해 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옥상녹화를 통한 서울시 녹지공간 확보를 장려하고, 옥상녹화에 대한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.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
안 제13조(표창) 조항을 신설하여, 서울시장이 옥상녹화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하고, 옥상녹화 조성지역 중 유지관리가 우수한 옥상녹화 사례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옥상녹화가 장려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